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년세대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 추진 명시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42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년세대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 추진 명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회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청년세대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 추진 명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추진하여야 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에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 ----- ----- ----- .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7조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남녀갈등 인식이 다른 연령대의 인식에 비하여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세대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20대·30대에서 다른 연령대 내의 인식 차이보다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 간 약 40%p 차이가 났으며, ‘남녀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 간 약 20%p 차이가 났음.

< 연령대별 성평등 수준 체감도 >

(단위: %, %p)

구 분		남녀평등하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2016	2021	증감(%p)	2016	2021	증감(%p)	2016	2021	증감(%p)
전체 ¹⁾	전체	21	34.7	13.7	62.6	53.4	△9.2	16.4	11.8	△4.6
	여성	14.6	27.8	13.2	74.2	65.4	△8.8	11.2	6.7	△4.5
	남성	27.5	41.7	14.2	50.8	41.4	△9.4	21.6	17	△4.6
15-18세	여성	-	36.5	-	-	60.3	-	-	3.2	-
	남성	-	54.2	-	-	31.5	-	-	14.2	-
20대	여성	9.4	22.4	13.0	81.9	73.4	△8.5	8.7	4.3	△4.4
	남성	28.7	46.8	18.1	35.9	29.2	△6.7	35.4	24	△11.4
30대	여성	7.2	19.6	12.4	84.5	76.8	△7.7	8.4	3.6	△4.8
	남성	23.7	40.0	16.3	54.1	40.7	△13.4	22.2	19.3	△2.9
40대	여성	11.6	22.8	11.2	79.3	68.6	△10.7	9.1	8.5	△0.6
	남성	22.6	39.1	16.5	61	47	△14	16.4	13.9	△2.5
50대	여성	15.9	27.8	11.9	71.4	65.5	△5.9	12.7	6.8	△5.9
	남성	31.3	38	6.7	50.7	46.4	△4.3	18	15.6	△2.4
60대 이상	여성	24.2	37.5	13.3	60.5	54.1	△6.4	15.2	8.4	△6.8
	남성	31.2	43.8	12.6	51.4	42.1	△9.3	17.3	14.0	△3.3

주 1) 전체 통계수치에서 15~18세(청소년)은 제외.

주 2) 표본규모·조사대상: 전국 4,490 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총 8,358명)

자료: 성평등가족부(2022.04.),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4쪽의 표 재작성.

2)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에도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2025. 3. 발표한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³⁾에서도 2022년도와 2024년도에 청년세대 중 남녀 갈등이 많은 편이거나 매우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0~70%대로 매우 높게 집계되었음.

<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 인식 >

(단위: %)

구 분			합계	없는 편	거의 없다	전체 ¹⁾ 합계
	매우 많다	많은 편				
2022년	24.6	47.7	72.3	24.8	2.9	100.0
2024년	23.9	42.7	66.6	28.8	4.6	100.0

주 1) 표본규모·조사대상: 19~34세 청년을 포함하는 전국 15,098 가구, 15,098명의 청년.
자료: 국무조정실(2025.03.),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쪽의 표 재작성.

그리고 한국리서치가 2025년 5월에 발표한 집단별 갈등인식 조사에 따르면 세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갈등요소가 남녀갈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18~29세 응답자 중 41%, 30대는 37%가 남녀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60대의 응답자는 11%, 70세 이상 응답자는 7%만이 남녀갈등이 아주 크다고 답하여 세대 각 인식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⁴⁾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추진하여야 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에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⁵⁾의 양성평등 의식을

3)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부터 2년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임.

4) 18~29세와 30대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야갈등, 이념갈등 다음으로 남녀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동한, “여론속의 여론-기획: 2025 집단별 갈등인식 조사”,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330-2호, 2025. 5., 한국리서치, 8면 참조.

5)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높이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세대 내 남녀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20·30 청년세대의 성평등인식격차 및 남녀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37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개별적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성평등가족부도 현행법 제37조제1항을 근거로 제2026년도 예산에 청년세대의 성별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청년이 성별 불균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플랫폼을 마련하는 등의 목적으로 청년세대 성별 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위한 예산 6억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2026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	수행 방식
(가칭)2030청년 위원회 구성운영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 운영 (성불평등 의제 발굴·기획 및 조사·토론)	321	민간 경상 보조
성불평등 사항 제안 제도운영	성별 불균형 정책과제 국민제안 (온라인 및 현장 제안)	252	
성평등 인식개선	인식개선 관련 공모전 및 홍보콘텐츠 제작	74	
상용비	국내여비(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비(각종 회의 추진 등)	16	직접 수행
계		663	-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완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충청북도는 현행법 제37조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전체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문화조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특정 계층을 별도로 열거하는 것은 조문의 포괄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은 청년 정책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충청북도 영동군은 현행법 제37조제1항은 모든 법률을 포함하는 제

반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정 법률 포함 시 본 법률 조항의 전체 취지를 오인할 수 있는 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50
